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미부과**

소 관 기 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 치 기 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용

1. 업무 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및 제24조 등에 따르면 광산구 등 시·군·구[166]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않는 자에게 해제대상지역의 ㎡당 개별공시지가[167] 평균치의 100분의 15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166)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음

167)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168]에게 알려야 하고, 개발계획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개발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6. 2. 11. 광산구 등 일원에 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면적 1,146,823㎡)하는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9호, 고시 예정일: 2016. 2. 19.)를 광주광역시에 시행(문서번호: 국토교통부 ♠과-666)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등을 승인받으면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2016. 2. 17. 국토교통부의 공문 및 고시문을 붙임으로 한 “광주 도시관리계획(ㄴ 산단 GB해제)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재 협조요청”(광주광역시 ■과-1372) 문서를 광산구에 시행하였고, 같은 해 10. 11. ㄴ 일반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을 승인한 고시문(광주광역시 고시 제2016-182호, 고시일: 2016. 10. 1.)을 붙임으로 하여 “ㄴ 일반산업단지계획(1단계)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광주광역시 ◉과-7255) 문서를 광산구에 시행하였다.

따라서 광산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ㄴ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즉시 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징

168)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음

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광산구 ◧국 ◨과 담당자 BM, ◩팀장 BN 및 과장 BO는 2016. 2. 17. 광주광역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등을 승인을 받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공문(광주광역시 ◘과-1372)을 선람하거나 공람하였고, 광주광역시가 2016. 10. 1. ㄴ 일반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ㄴ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 1년 7개월이 지난 2018. 5. 18.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 주식회사[169)][대표이사 BP, 광주광역시 동구]에 부담금 3,562,959,0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광산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018. 5. 28. 미부과된 부담금 3,562,959,000원을 부과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법령 숙지 등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①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광산구가 2018. 5. 2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 주식회사(대표이사 BP)에

169)"☞☞ 주식회사 주주간협약서"(2015년 12월)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위 산단 조성사업을 제3섹터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자(지분율)는 ㈜♨♨(26.7%), 광주광역시(24.6%), 광주광역시도시공사(24.4%) 등으로 되어 있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3,562,959,000원을 부과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통보(시정완료)]

②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구역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